

「2026년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계획」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라, 지역 내 임금·복지수준과 일-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「2026년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3. 16.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1. 사업개요

- 선정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사업내용: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및 청년·기업 지원
- 선정규모: 청년 70명(신청상황·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)
- 선정기간: 2026. 6. 1.~2027. 5. 31.(2년간)

2. 신청대상

- 대상업종: 전 산업분야
- 신청분야: 2026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
- 대상기업
 - 2026. 3. 1.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2년 이상*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¹⁾ 이상 중소기업²⁾
 - ※ 본사 및 지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 대해서만 인정
 - * 도외에서 이전한 기업은 예외 적용(단, 본사가 제주에 있는 경우에 한함)

1) '26. 2. 28. 기준(공고일 전월 기준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 수(상용)

2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

○ 신청자격

항목	기준 내용	선정 요건
임금	공고일 기준 2년차 이상 노동자의 월 임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	필수
고용안정	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위적인 노동자 감원이 없을 것 ※ "인위적 감원" :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-23 -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	필수
일생활균형	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,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③ 가족돌봄휴가, ④ 유연근무제(재택, 시차출퇴근, 근로시간 단축, 자율출퇴근제 등), ⑤ 특별휴가, ⑥ 대체휴일제, 샌드위치 데이(유급), ⑦ 고향 방문 항공료 등 운영(지원), ⑧ 초과근무 방지 시스템, ⑨ 휴식 보장(낮잠 타임 등, 법정휴게시간 제외) ⑩ 장기 휴가 실시(연속하여 5일 이상), ⑪ 주 4.5일제 근무, ⑫ 패밀리 데이(조기 퇴근일 지정), ⑬ 유급 안식휴가 등	3개 이상 운영*
직원 복지	① 자녀학자금, ② 휴가비용, ③ 주택자금 지원, ④ 건강검진비, ⑤ 교통비(주유 포함), ⑥ 자녀양육비, ⑦ 자녀입학 축하금, ⑧ 자녀수능격려금, ⑨ 내일채움공제(재형저축 포함), ⑩ 문화체험 프로그램, ⑪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운영(지원), ⑫ 직원 생일, ⑬ 창립기념일 직원 선물 제공, ⑭ 동호회 활동 지원, ⑮ 상조용품 지원 등, ⑯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(참여), ⑰ 직무교육 훈련(법정 직무교육 제외), ⑱ 대학(원) 학자금 지원, 수강시간 보장, ⑲ 해외연수(벤치마킹, 박람회 참가 등 포함), ⑳ 학원 수강료,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, ㉑ 유급 학습 휴가 지원 등	4개 이상 운영*

* 2025년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(증빙 첨부)

3. 신청 제외대상

○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*이 있는 기업(최종 사업 선정 검토 시점까지)

* 고용보험 상실사유 23(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)

○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
○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을 부정 수급하여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

○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
○ 자본잠식 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
- 근로기준법 위반(해고, 임금체불)으로 벌금 또는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
- 기타 사치,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, 환경오염, 불법 공장 등 사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-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에 해당하는 기업

4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: 2026. 3. 16.(월)~2026. 4. 10.(금) 18:00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접수
- 접수처: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(☎ 064-710-3795)
제주시 신대로 63, 205호(연동)

5. 신청서류

작성서류 (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[붙임 1]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1부 ◆ [첨부 1] 기업정보 ◆ [첨부 2] 신청 제외 요건 체크리스트 ◆ [첨부 3]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
첨부서류 (별도 준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◆ 중소기업확인서 1부 ◆ 주거례 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◆ 최근 2년('24년~'25년) 재무제표 1부 ◆ 4대보험 완납증명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◆ 고용보험가입자명부('26년1~3월) 각 1부 ◆ ('26년1~3월)청년근로자 임금대장(근로자 서명 및 원본대조 날인) 각 1부 ◆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1부(공고일 기준 1년 내역 포함) ◆ 사업 신청 요건 증빙 자료 각 1부(사업계획서, 계약서, 영수증, 지원 이력, 사칙, 세부 항목 이체 내역 등)

6. 추진절차



7. 심사 및 선정

○ 심사방법: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(7인 이내),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, 인증 규모는 예산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정할 수 있음

○ 평가항목(정량, 정성)

- ① 일생활균형, 청년임금, 직원복지 등 운영 실적, 제도화(사칙) 여부 등
- ② 청년 노동자 고용안정성
- ③ 기업 재무 건전성

○ 선정방법

- 1차 심사: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(현장실사 실시)
- 2차 심사: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2차 최종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(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기업)
 - * 신청상황·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

▣ 동점 시 선정 우선순위

- ① 일생활균형 제도 사업 운영이 많은 기업
- ② 직원 복지 제도 사업 운영이 많은 기업

※ 가점 사항

항목	기준 내용	비고
편의시설	① 구내식당, ② 기숙사(자체, 임차 포함), ③ 통근차량, ④ 휴게 시설, ⑤ 체력단련시설(회원권 지급 포함), ⑥ 숙박시설(회원권 지급 포함), ⑦ 시청각 회의실, ⑧ 재택근무 시스템(프로그램) 구축, ⑨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 지원 등	2개 이상 운영*

* 2025년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(증빙 첨부)

8. 선정기업 지원 사항

< 청년 지원 >

1. 연령기준: 만 18~39세 청년
 - * 선정기간 내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
 - 1986.1.1.생 청년이 2026.6.1.기준 40세로 3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 지원
2. 고용상태
 - ① 주 35시간 이상(유연근무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예외) 근무
 -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선정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(근속기간 충족 시부터 지원)
3. 지역여건: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

(3개 선택 가능 사항)

- ① (주택 임차금) 주택 임차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자(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)
: 월 30만 원 범위
 -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지원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지원 불가
- ② (정착 지원금) 제주 이주한 자: 월 20만 원(6개월)
 - '25. 1. 1.(주소 전입일 기준)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소 이전
- ③ (교통비) 사업장 출퇴근자: 월 10만 원
- ④ (자녀 돌봄 지원금) 만 6세 이하 자녀(1인당)를 두고 있는 자: 월 10만 원

(해당 사항 발생 시 지원)

- ⑤ (육아휴직 지원금) 육아휴직 중인 자: 월 10만 원
- ⑥ (장기근속 축하금) 입사일 기준 재직기간 산정

구 분	2년 이상	3년 이상	5년 이상	7년 이상
축하금	30만 원	50만 원	70만 원	100만 원

- ⑦ (건강 검진비)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검진대상자: 연 30만 원 범위
- ⑧ (결혼축하금, 출산축하금, 입양축하금, 육아휴직 복귀 축하금) 50만 원
 - 선정일 이후 결혼, 출산, 입양, 육아휴직 복귀하는 경우(택 1회)
 - * 출산, 입양의 경우 1인당 50만 원
- ⑨ (직무교육훈련비)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연 50만 원 범위

<기업 지원 >

- ①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서 수여
- ② 구내식당 또는 통근차량 운영(임차) 비용 지원: 월 50만 원 범위
 - 별도의 구내식당(공간, 조리 장비 등)을 조성한 경우에 한함
 - 통근차량은 고정으로 출퇴근 노선 지정 및 이용 직원 내역, 차량 운행일지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함
- ③ 인증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장려금
[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장려금(고용창출(채용) 장려금 지원 대상자 제외)]
 - 월 50만 원(채용 후 3개월 경과 시부터 분기별 지급, 최대 600만 원)
 - 인증 기준 상시근로자보다 채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지원
 - 중도 퇴사 시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
- ④ 업무처리 담당자 인센티브: 지원금 대상 청년 1인당 월 2만 원, 월 최대 20만 원
- ⑤ 청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인센티브: 1인당 월 10만 원
- ⑥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업 부동산의 재산세 50% 감면
- ⑦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

9. 사업 선정 취소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- ② 신청자격, 선정방법 등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③ 보조금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- ④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⑤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⑥ ①~⑤항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10. 유의사항
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, 지연신고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하고,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합니다.
- 사업 선정 후 기존 임금 또는 직원 복지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기업 현장 확인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.
- 사업 신청일 이후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확인되는 기업은 최종 사업 선정에서 배제되오니, 감원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사업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 내용 외 사항은 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.

■ 작성 유의사항

-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제출
- 사본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본의 경우 발급기관의 '원본대조필' 필요

[붙임 1]

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

기업체명			
대표자 성명 (생년월일)	()	홈페이지	
		휴대폰	
설립 연월일		사업자번호(법인번호)	
담당부서		기업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담당자			
연락처		이메일	
소재지	(우편번호:)	소유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자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상시근로자수 (제출일 기준)	총 명(청년: 명) * 18세~39세 이하 ☞ 제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재		
1. 일생활균형:	개	(운영사항)	
2. 직원복지:	개	(운영사항)	
3. 편의시설:	개	(운영사항)	
4. 임금: 청년 노동자(2년차 이상) 월 임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
5. 고용안정: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인위적인 노동자 감원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
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오며, 본 신청서 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.			
20 년 월 일			
신청기업:		대표:	(인)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			
※ 첨부서류: 신청서류 일체(사업별 이용자 현황, 지원내역 등 증빙자료 포함)			

[첨부 1] 기업 정보

기업 연혁	※ 기업의 연혁, 성장스토리 등
기업 비전	※ 기업의 미래비전 등 소개
기업 인프라	※ 신청기업 운영 공간 등
기업 현황	※ 기업 주력제품(매출), 매출성장 추이, 기업 관련 업무, 지역 내 활동 현황 등
직무능력 향상계획	※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 계획 등
복지혜택	※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복리후생 내용
근로조건 (신규채용기준)	<input type="checkbox"/> 월임금 총액: 만원(제수당 항목:)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시간: 주 일, 1일 시간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일: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:

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1. 본인은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본 기업 정보 및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의하여 귀 기관에서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2. 귀 기관이 취득한 본인(기업)의 개인정보는 아래의 동의사항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.
 - 가.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심사 제출자료 사실 여부 확인
 - 나. 각종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고지사항 전달
 - 다. 기타 지원정책 자료 활용 등
3.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(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)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 결정 취소, 지원 중단·환수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동의인

기업명:

대표자:

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